

COOK1015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 20130100320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 2013-04-26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24-06-05

www.cook1015.com

[국1015]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 「(주)홍익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홍익푸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난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충청남도 계룡시 암사면 계백로 3034-16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TEL : 042-551-1018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FAX : 042-551-1315

[가맹사업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TEL : 080-080-1015

목 차

- I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 가맹본부의 『국1015』 가맹사업 현황
- III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홍익푸드	쿡1015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3034-16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5.01.08	2015.01.08	김미란	042-551-1018	042-551-1315
	법인등록번호	161211-0033258	사업자등록번호	307-81-4847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김미란 (주)홍익푸드	쿡1015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3034-16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미란	042-551-1018	042-551-1315
사용인 (임원)	김인오	쿡1015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3034-16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미란	042-551-1018	042-551-131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 회사	(주)부대통령	부대통령 똑배 기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3034-16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인오	1577-3769	042-551-1315
	법인등록번호	161311-0049774	사업자등록번호	307-81-4847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쿡1015 컨설팅	쿡1015	2016.04.1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영덕동, 흥덕아이티밸리 제B동 603호)	김인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쿡1015]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	-----	-------

명 칭	쿡1015	‘요리’라는 의미의 ‘쿡(Cook)’과 10분~15분 정도의 간편한 조리시간이라는 의미의 ‘1015’로서 쿡1015 ‘는 ‘반조리 가정식 간편요리 테이크아웃 전문점’임
상 호	Cook1015 ○○점	-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4011383820000
광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2021년	1,030,454	249,341	781,113	5,231,006	-35,072	-36,378
2022년	981,888	432,502	549,386	4,213,198	-203,436	-202,533
2023년	765,165	316,895	448,270	1,912,049	-179,569	-101,115

※ 그 근거자료는 별첨[재무현황]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상기 ‘1)’의 매출액과 같음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임원	김미란	대표	2016.12~현재	대표	기업총괄
관련 임원	김인오	이사	2015.1~현재	이사	사업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상근	비상근	4
	2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구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계열회사	(주)부대통령	가맹사업경영	2018.3~현재	부대통령떡배기(등록번호: 20180395)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 전문점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당사의 서비스표 사용권	2015.10.26 등록	등록 4011383820000	김인오	2025.10.26 (2025.10.26)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상기 상표권소유자로부터 당 가맹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용권을 득하였습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국1015]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2년 03월 17일

2. 국1015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국1015	국1015	김미란	2012.3~2015.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수실2길 47(472-2)
국1015컨설팅	국1015	김인오	2015.1~2016.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영덕동, 흥덕아이티밸리 제B동 603호)
(주)홍익푸드	국1015	김인오	2016.4~2016.12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3034-16
(주)홍익푸드	국1015	이재청	2016.12~2018.3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3034-16
(주)홍익푸드	국1015	김미란	2018.3~현재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3034-16

3. 국1015 업종

가맹본부 상호	업종	
국1015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가정식 요리 및 테이크-아웃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국1015]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단위: 개)

지역	2021년도 말			2022년도 말			2023년도 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96	96	-	75	75	-	53	53	-
서울	5	5	-	3	3	-	-	-	-
부산	4	4	-	5	5	-	4	4	-
대구	3	3	-	1	1	-	1	1	-
인천	4	4	-	3	3	-	1	1	-
광주	4	4	-	4	4	-	3	3	-
대전	5	5	-	5	5	-	3	3	-
울산	4	4	-	4	4	-	2	2	-
세종	4	4	-	3	3	-	3	3	-
경기	26	26	-	20	20	-	17	17	-
강원	-	-	-	1	1	-	1	1	-
충북	6	6	-	5	5	-	3	3	-
충남	6	6	-	4	4	-	3	3	-
전북	12	12	-	10	10	-	5	5	-
전남	2	2	-	1	1	-	1	1	-
경북	4	4	-	3	3	-	3	3	-
경남	6	6	-	2	2	-	2	2	-
제주	1	1	-	1	1	-	1	1	-

5. 최근 3년간 [국1015] 가맹점 수

최근 3년간 당사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13	5	0	22	7	96
2022	96	3	0	24	4	75
2023	75	1	0	23	4	53

6. [국1015]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 12	2022. 12	2023. 12
계열 회사	(주)부대통령	부대통령떡배기	20180395	한식	25/-	21/-	22/-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전년말 가맹점수	전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6개월미만 영업제외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53	215,019	17,345	646,118	50,315	47,803	3,677	
서울	-	해당없음						
부산	4	해당없음						5곳미만
대구	1	해당없음						5곳미만
인천	1	해당없음						5곳미만
광주	3	해당없음						5곳미만
대전	3	해당없음						5곳미만
울산	2	해당없음						5곳미만
세종	3	해당없음						5곳미만
경기	17	239,317	18,922	646,118	50,315	66,160	4,410	
강원	1	해당없음						5곳미만
충북	3	해당없음						5곳미만
충남	3	해당없음						5곳미만
전북	5	260,091	22,041	463,539	42,139	96,000	7,709	
전남	1	해당없음						5곳미만
경북	3	해당없음						5곳미만
경남	2	해당없음						5곳미만
제주	1	해당없음						5곳미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

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53	1,710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별도의 지역본부(지역총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전년도 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	-	-	-	-
광고	-	-	-	-	-	-
판촉	-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신사업 추진부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01-1번지	02-3788-5492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고
하나은행 계좌 있는 사업자		①하나에스크로(hanaescrow.com)에 가입 후 로그인 → ②(계약정보조회) 클릭 → ③(가맹본부명) 클릭 → ④가맹점사업자 정보입력 → ⑤공인인증 → ⑥휴대폰문자로 가상계좌번호 전송받음 → ⑦전송받은 가상계좌에 예치가맹금 이체	
하나은행 계좌 없는 사업자		하나은행 계좌 개설 후 위의 절차 실행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현재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쿡1015]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물품보증금	해당없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5,500~5,800	계약체결 시	가맹사업법 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 반환될 수 있음 (이하 설명)	가맹점 오픈 및 관리를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
홍보기획관리비	3,850			
교육훈련비	2,200			교육이 실시된 경우
총계	11,550~11,850			

가) 최초 가맹금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계약 제10조에 따라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비, 홍보기획관리비 및 교육비를 포함한 최초 가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가맹비

귀하는 당사로부터 가입비 및 가맹점 개설을 위한 인력, 운영매뉴얼 제공 등 각종 지원을 제공받는 대가로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비는 가맹점 개설 전 및 초기에 개설지원 및 제공의 대가로 소멸되는 비용입니다.

② 교육훈련비

귀하 및 그 종업원은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본부의 교육계획에 따라 신규 교육(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가로 가맹계약 체결 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귀하의 요청에 따른 수강신청인원이 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홍보기획관리비

귀하는 당사로부터 초기 가맹점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마케팅지원, 배너, 전단, 이벤트 풍선 등 각종 판촉지원에 대한 대가로 가맹계약 체결 시 홍보기획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금의 반환조건

- ① 귀하의 귀책사유로 가맹점 개점 전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위의 가맹비 중 당사가 이미 이행한 부분인 기술의 이전 등 노하우 제공 및 소멸성 비용을 제외한 가맹비를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계약 제45조 제1항 참조).
-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가맹점 개점 전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위의 가맹비 중 당사가 이미 이행한 부분인 기술의 이전 등 노하우 제공 및 소멸성 비용을 제외한 가맹비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계약 제45조 제2항 참조).
- ③ 가맹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금을 반환하는 경우, 전체 가맹계약 중 계약이행기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이미 계약을 이행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맹금은 공제하고 반환합니다(가맹계약 제45조 제4항 참조).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물품보증금	해당없음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가맹비	5,500~5,800
홍보기획관리비	3,850
교육훈련비	2,200
물품보증금	0
합계	11,550~11,850

-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33.06㎡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06㎡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협력업체)	16,500	1,650	이하 설명	반환조건 없음	평당[1,650]천원
주방설비류	(협력업체)	11,000		이하 설명	-	-
쇼케이스	(협력업체)	13,530		이하 설명	-	주문 제작 쇼케이스 2대
POS	(협력업체)	0		이하 설명	-	무상지원
간판비	(협력업체)	2,200		이하 설명	-	-
초도물품비	(협력업체)	3,000~5,000		이하 설명	-	변동가능 (이하 설명)
기타 개점비용 (소모품 등)	(협력업체)	1,100		이하 설명	-	소모품 내역 (별첨Ⅲ참조)
총계		47,330~49,330	4,733~4,933	-	-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인테리어

인테리어 설비는 당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당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시공합니다(가맹계약 제20조 제2항)

인테리어 전체 시공비용의 50%는 시설공사 3일 전에 당사 또는 당사지정업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 50%는 공사감리 및 개점 3일 전까지 당사 또는 당사지정업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가맹계약 제24조 제1항 참조).

나) 주방장비류 및 간판비 등

귀하는 당사가 정하는 규격 및 모델([24]쪽참조)의 주방장비 및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가맹계약 제21조 제1항). 또한 귀하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한 간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방장비 및 설비, 간판에 대한 설치비용 및 기타 소모품 비용은 전체 설치 및 공급비용의 50%는 각각 설치공사 3일 전까지 당사 또는 당사지정업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50%는 감리 및 개점 3일 전까지 당사 또는 당사지정업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가맹계약 제24조 제1항 참조). 단, POS 장비의 경우 무상으로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초도물품비

귀하는 당사에 초도물품비용의 명목으로 개업 시 공급물량에 따라 금 3,000천원 내지 5,000천원(부가세포함)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가맹계약 제23조 제6항 참조). 단, 점포의 크기 및 물품의 공급사정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초도물품대금의 경우 가맹계약 시 총대금의 50%를 지급하고, 개점 1일전에 나머지 잔금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가맹계약 제24조 제1항 참조).

※ 별도사항

: 간판 공사 (인·허가 규정 사항 준수),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가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닥트공사, 소방설비, 냉난방기, 오디오 등

※ 관리감독대가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의 관리감독 대가로 3.3㎡ 기준으로 [220]천원을 인테리어 공사 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위 사항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가맹희망자 가 최종 결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특별한 제한 없음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위생교육 수료자, 보건증 소지자
종업원		만18세 이상, 보건증 소지자

귀하는 식품위생법 등 관령 법령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가맹점운영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사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① 귀하는 당사가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규교육은 을의 개점 전 4주전부터 2인이 5~7일간(하루 8시간 소요)을 할애하여 제조 관련 기술을 전수받으셔야 합니다(가맹계약 제34조 제2항).
- ② 귀하와 귀하가 채용한 종업원은 당사가 정한 장소에서 신규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가맹계약 제34조 제1항, 제3항, 제4항).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국1015]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필수물품의 상세한 내역은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기 표의 공급업체는 그 물품의 성능 및 품질이 인정되어 당사가 일정한 조건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는 업체들이며, 귀하에 대한 물품공급 전반은 당사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와 귀하가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물품내역 및 공급업체는 매장상황이나 공급업체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8) 당사는 가맹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 납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계약에 명시된 대로의 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사유	비고
로열티	(협력업체)	매월 165	익월 5일까지	후불로 반환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귀책사유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협의하여 결정	변경 내용 미이행 시	변경 후	-
광고분담금	(협력업체)	광고비50%중 가맹점매출액비율에 따라 분담	비용통지 후 5일 내 납부	-	광고시행 후	-
판촉분담금	가맹점사업자자율 결정	자세한 내용은 [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환경개선예	(협력업체)	당사의 기준에	당사의			VII. 1.

다른 간판변경 비용	)	따라 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업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협력업체)	법정이자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POS 사용료	(협력업체)	16.5	매월 대금청구시	반환조건없음	반환되지 않음(소멸성 수수료)	-

※ POS 설치에 대하여는 귀하는 통일적인 가맹사업 경영 및 판매전략 수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맹점 내부에 당사가 정한 사양의 POS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가맹계약 제30조 참조).

구분	일시불(단위:천원)	공급방법	공급업체
POS 장비	무상지원	가맹본부와 별도계약체결	(협력업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 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사전에 제시한 품질·위생기준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관리, 감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내 용	빈도 /시기	담당팀	비고
운영관리	- 가맹점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가맹점을 출입 및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수시	수퍼바이저 /당사의 임직원	문의 : 쿡1015 가맹본부 041-854-9557
고객관리	- 교육 서비스 관찰 및 고객 또는 피고용인과 면접할 수 있는 권리	수시	수퍼바이저 /당사의 임직원	
회계관리	- 회계장부(포스) 등 경영전반에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수시	수퍼바이저 /당사의 임직원	
재고관리	- 실재 재고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수시	수퍼바이저 /당사의 임직원	
레시피관리	- 수퍼바이저 또는 메뉴바이저를 통한 매장의 균일한 레시피 관리	수시	수퍼바이저 /당사의 임직원	
위생관리	- 위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매장과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	수시	수퍼바이저 /당사의 임직원	

※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맹점사업자와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와의 쌍방 간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며,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의 재계약의 연장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의 갱신 시에는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의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원칙적으로 당사는 모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양도인)는 최초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물품보증금에 대해서 계약의 종료일(양도일)로부터 4주일이내에 잔존 채무(물품대금포함)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상환하지만, 보증금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귀하(양도인)는 나머지 채무액을 당사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부담이 발생합니다.

가) 잔여계약기간으로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	-
홍보기획관리비	-	-
교육비	2,200	부가세 포함
물품보증금	해당없음	

나) 신규계약 기간으로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5,500	부가세 포함
홍보기획관리비	3,850	부가세 포함
교육비	2,200	부가세 포함
물품보증금	해당없음	

※ 이러한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 상표, 로고,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가맹계약 제46조 참조).

가)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을 즉시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간판 등 제반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인터넷상의 사용도 포함)을 중단하고 이를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는 기타 갑의 상호나 상표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직·간접적으로 자신이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자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는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받은 매뉴얼, 문서, 도면, 도서 등 관계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라)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마)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갑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갑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할 경우 무단상표사용에 해당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사)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제거, 물품의 반환·폐기 등을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아) 가맹점사업자는 미불금이 있는 경우 즉시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계약 기간 중에도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설비리스트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 상기 주요품목은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

한 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을 의미합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단위;원)	비고
	해당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
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부대찌개	왼쪽에 기재된 상품 및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1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회 서면시 정 요구 후 계약 해지	
소곱창전골			
불낙전골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김치찌개			
동태찌개			

알탕			
육개장			
닭볶음탕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오리주물럭			
오삼불고기			
제육볶음			
낙지볶음			
김치콩나물국			
북어국			
오징어무국			
소고기무국			
소고기미역국			
해물파전			
쫄떡볶이			
어묵탕			
번데기			
바지락생면칼국수			
떡만두국			
카레			
짜장			
야채볶음밥재료			
김치볶음밥재료			
새우볶음밥재료			
날치알볶음밥재료			
소고기볶음밥재료			
비빔밥재료			
소불고기			
공기밥			

- ※ 위 상품은 당사의 대표적인 상품만을 나열한 것으로서 이 외에도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 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위 표에 기재된 상품의 변경 또는 추

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추가적인 제한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다른 가맹점 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A안 권장가격 (단위 : 원)	B안 권장가격 (단위 :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부대찌개	8,000	9,000	변경시 월별 서면 통지	2024년 1월 기준
소곱창전골	15,000	15,000		
불낙전골	11,000	11,000		
순두부찌개	5,000	5,000		
된장찌개	5,000	5,000		

청국장	5,000	5,000		
김치찌개	5,000	5,000		
동태찌개	7,500	9,000		
알탕	10,000	10,000		
육개장	7,000	9,000		
닭볶음탕	15,000	15,000		
갈치조림	14,000	14,000		
고등어조림	7,500	8,000		
오리주물럭	10,000	10,000		
오삼불고기	10,000	10,000		
제육볶음	8,000	8,000		
낙지볶음	12,000	12,000		
김치콩나물국	4,000	4,000		
북어국	4,000	4,000		
오징어무국	4,500	4,500		
소고기무국	4,000	4,000		
소고기미역국	4,000	4,000		
해물파전	7,000	7,000		
쫄떡볶이	4,500	5,000		
어묵탕	4,000	4,000		
번데기	3,000	3,000		
바지락생면칼국수	7,000	7,000		
떡만두국	7,000	7,000		
카레	4,000	4,000		
짜장	4,000	4,000		
야채볶음밥재료	2,000	2,000		
김치볶음밥재료	2,500	2,000		
새우볶음밥재료	3,000	3,000		
날치알볶음밥재료	3,000	3,000		
소고기볶음밥재료	3,000	3,000		
비빔밥재료	4,000	4,000		
소불고기	10,000	10,000		
공기밥	800	1,000		

※ 권장가격 이외에 event 할인, 프로모션 할인, 쿠폰행사 등 가격할인 행사에 관한 사항은 영업 환경변화에 따라서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 상권과 매장의 여건에 따라 가격을 A안, B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권장가격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가정식 요리 및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	쿡1015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거주인구, 세대수, 상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통상 400M 이내를 영업지역으로 함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지도) 표시 *경계선 미포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쿡1015’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7) 그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국1015]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입니다.

위에서 정한 계약기간과 다르게 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협의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⑧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다만,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되며 갱신비가 발생함)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국1015]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9조 제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을이 제3조의 영업표지 등 사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을이 가맹비, 교육비, 물품대금, 로열티 등 기타 본 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을이 제13조(개점일 및 영업조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을이 제21조(영업의 양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을이 제22조(영업비밀유지의무)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을이 본사에서 규정한 복장을 착용치 않으실 경우 7. 을이 갑으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17조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제17조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변경 안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 계약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안이 관계법령 기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에 근거한 내용으로서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갱신거절 등의 사유가 될 수도 있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서면요청이 있는 후 본사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유무를 통지하게 되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가) 양수인이 잔여계약기간만을 승계받은 경우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양수인은 최초 가맹금 중 가맹비 및 홍보기획관리비를 제외한 교육훈련비와 물품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조건으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나) 양수인이 신규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최초가맹금과 물품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업무위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운영을 상속하기 위하여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서면 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청→승인여부통지→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능	-	-	-
업무위탁	불가능	-	-	-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가맹비와 홍보기획관리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점 전 최초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가맹계약 제50조 제4항).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국1015]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가정식 요리 및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	해당 없음	문의 : 당사 (TEL 041-854-9557)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국1015]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일)	영업일수(연간)	비고
09:00~22:00(13시간)	300일 이상(주6일 근무시)	문의:당사(TEL:041-854-955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포사정에 의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직접 근무(협의가능)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시기	담당팀
품질(Quality)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당사
서비스(Service)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서비스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당사
청결(Clean)	담당자 매장 방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당사

※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취급여부, 청결 및 정돈 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월 매출, 연 매출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지역 광고	브랜드광고	50%	광고비50% 중 가맹점매출액비율에 따라 분담율 산정	광고계획공고→가맹점참여여부결정 →가맹점부담액 결정	대중매체광고 (TV, 신문, 일간지 등)
	서비스/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해당 없음	
개별 광고/판촉	가맹점매출증진	없음	전액부담	당사와 협의 후 실시	개별광고/판촉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및 판촉 활동

가맹사업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 및 판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면 됩니다(가맹계약 제42조 제6항 및 제43조 참조).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판촉, 홍보 매뉴얼 그밖에 영업활동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담긴 자료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

간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가맹본부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위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계약조문
① 제18조(영업비밀유지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을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2에서 규정한 손해액의 추정규정에 의거 가맹비와 동일한 금액을 갑에게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이 계약기간 중 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를 위반하여 갑의 경쟁사업자의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1,000]만원을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이 가맹계약상 기타 제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0일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33.06㎡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및 응대	D-4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 인근10개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39~38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정 승인	D-27~24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3	
가맹금 예치	- [농협]에 가맹금 입금	D-23	[13] 쪽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18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17	[16] 쪽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17~5	
기기/물품 구입	- 주방설비 및 주방기기/ 초도물품	D-4~1	[16] 쪽
인력 배치/교육 실시	- 가맹점 오픈에 필요한 인력 구인 - 사전 교육 실시	D-8~1	-
가맹점 오픈	- 가맹점 오픈 및 영업시작	D - DAY	-
합계	-	40일 내외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상담과정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 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없음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차후 진행시 사전협의
CRM	해당없음				
테스터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관리 팀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관리 팀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창업대출을 위한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별도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국1015]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련종류		주요내용	교육생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가맹점 운영 교육 및 기술전수 교육	이하 설명	가맹점사업자	매장 내 이론/실습 교육	개점 전 4주일부터 5~7일간 (하루 8시간소요)	필수교육
보수교육	운영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신메뉴교육 / 매출증대 방법	가맹점사업자	실습교육	신규교육 이수 후 매월 정기 방문실시	선택교육

※ 신규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① 교육 안내

- 교육 장소 : 본사 교육장 및 가맹점
- 시 간 : AM 09:00 ~ PM 18:00(8시간)
-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5~7일간)

② 교육 내용

주요 교육 내용
○ 오리엔테이션
○ 국1015의 비전 등
○ 매장 내 실습교육(야채손질법 등)
○ 매장 내 실습교육(찌개류 손질법, 포장교육 등)
○ 매장 내 실습교육(볶음류 손질법, 포장교육 등)
○ 매장 내 실습교육(국, 기타 음식 손질법, 포장교육 등)
○ 매장 내 실습교육(반찬류 손질법, 포장교육 등)
○ 매장 내 실습교육(고객 응대요령 및 기타 서비스 교육)

○ 효율적인 재고관리법
○ 배송시스템의 이해
○ 원가절감 교육
○ 위치의 특성에 맞는 메뉴 개발법
○ 오피스 상권의 신메뉴 개발법

2. 교육,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국1015]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교육	약 40~56시간	2,200	가맹점사업자 및 직원1명 (총 2명기준)
보수교육	협의	실비수준(협의)	-외부 강사 초빙시 추가 실비 발생

3. 교육, 훈련의 주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계약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와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별 지 목 차

[별지 Ⅰ] 재무현황

[별지 Ⅱ] 원·부재료 내역

[별지 Ⅲ] 소모품 내역

[별지 Ⅳ] 쿡1015 가맹점 목록

[기타]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 가맹점사업자의 장래점포 예정지 인근 현황
- 가맹금 예치신청서



[별지 Ⅰ] 2021, 2022, 2023년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 II]

원 · 부재료(상온/냉동 · 냉장) 공급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 III] 소모품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Ⅳ] 국1015 가맹점 목록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수령 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사업자의 장래점포 예정지 인근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금예치신청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41-854-9557)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cook1015.com]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